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379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6.

발 의 자 : 한준호・김우영・윤종군
박지원・이재강・강준현
임미애・서영석・민형배
안태준・이건태・조계원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(현행법 제1조),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.

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,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,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・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.

이에 재직 중 수사・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・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5조).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각 호에 따른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.

11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가. 고문, 폭행, 협박, 위계, 그 밖의 위법한 방법으로 피의자, 참고인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강요한 행위

나. 증거를 위조·변조·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1호에 따

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. <후단 신설>	제5조(변호사의 결격사유) ----------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각 호에 따른 결격 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1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수사 또는 공소제기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 고문, 폭행, 협박, 위계, 그 밖의 위법한 방법으로 피의자, 참고인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강요한 행위 나. 증거를 위조·변조·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

	위